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제조사·공급사 : ㈜하늘터정보통신
○ 기술지원품목 : 스토리지 V7000(936TB)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4,840,000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하늘터정보통신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제조사·공급사 : ㈜파로스시스템
○ 기술지원품목 : HVMP VSP G400 (3,540TB), HVMP 컨버지드 서버 (15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45,271,972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파로스시스템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제조사·공급사 : ㈜한기술
○ 기술지원품목 : RS-HGS-1016/3016(3008TB), TG-5000B(2대), TG-1000B(2대), SG-8800(2대), TG-40B(39대), CS3852GX(2대), CS3826XQ(4대), CS3832GXE(3대), Ti컨트롤러(1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59,751,628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7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한기술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제조사·공급사 : ㈜누리콘
○ 기술지원품목 : IP Wall 컨트롤러 ViewFlex (60채널)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8,321,530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누리콘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제조사·공급사 : 스콥정보통신(주)
○ 기술지원품목 : IP관리 시스템 IPScan NAC(1식), IPScan 서버(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6,035,285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스콥정보통신(주)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제조사·공급사 : ㈜마크애니
○ 기술지원품목 : 영상반출 S/W (1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3,833,280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마크애니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충남 아산시 정보통신과
○ 제조사·공급사 : ㈜파로스시스템
○ 기술지원품목 : 저장분배 S/W (115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84,018,000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파로스시스템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제조사.공급사 : ㈜시큐어키

○ 기술지원품목 : 패스워드 관리 S/W (4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7,275,500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어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제조사·공급사 : ㈜우산씨앤씨

○ 기술지원품목 : 내부통제 오남용 S/W (4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15,070,000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우산씨앤씨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제조사·공급사 : ㈜디케이앤트
○ 기술지원품목 : 자산관리솔루션(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11,132,000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디케이앤트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제조사·공급사 : ㈜세종보안시스템
○ 기술지원품목 : 차량번호인식 카메라(S/W포함) - 17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9,890,000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세종보안시스템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제조사·공급사 : ㈜엠택
○ 기술지원품목 : 차량번호인식 카메라(S/W 포함) -12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6,980,000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엠택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통합유지관리용역
○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제조사·공급사 : ㈜엑시냅스
○ 기술지원품목 : 차량번호인식 카메라(S/W포함) - 40대

제1조(목적) 이 협약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 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23,270,000원(VAT 포함)에 낙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협의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9월 일

발 주 기 관 명 충청남도 아산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엑시냅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아 산 시
○ 제조사·공급사 : ㈜아이앤이
○ 대상품목 : SECUI MF2 3100 2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CCTV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위 물품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250,000(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9월 일

발주기관명 아산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아이앤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CCTV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아 산 시
○ 제조사·공급사 : ㈜시큐어키
○ 대상품목 : APPM for Password v1.4 Server Module 1식, Agent 80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통합관제센터 및 현장CCTV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위 물품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710,000(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09월 일

발주기관명 아산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어키 (인)